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824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정 지 은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                  | 3 |
| 1.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윤준병의원안, 박덕흠의원안) ..... | 3 |



## I. 개요

### 1.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824호)

####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덕흠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6. 13.
- (3) 회 부 일 : 2025. 6. 16.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해 국내 농가인구는 200만 4,000명으로 젊은 층의 도시 이동과 농촌 출생률 저하,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 등으로 매년 줄어들어 들고 있으며,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55.8%에 이르는 수준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농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영농 상속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영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농림어업을 제외한 제조업·도소매업 등의 일반 업종이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이에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하고, 젊은 영

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는 등 농가의 영농상속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3제1항).

##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1.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윤준병의원안, 박덕흠의원안)

| 현행                                                                                                                                                                                                                                     | 개정안                                                                                                                                                                                                                                                                                                                                                                                                                                                                         |               |        |        |              |             |             |                               |             |             |               |              |              |
|----------------------------------------------------------------------------------------------------------------------------------------------------------------------------------------------------------------------------------------|-----------------------------------------------------------------------------------------------------------------------------------------------------------------------------------------------------------------------------------------------------------------------------------------------------------------------------------------------------------------------------------------------------------------------------------------------------------------------------|---------------|--------|--------|--------------|-------------|-------------|-------------------------------|-------------|-------------|---------------|--------------|--------------|
| <div><div><input type="checkbox"/> 영농상속공제(제18조의3)</div><div><div><input type="checkbox"/>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영농<br/>[양축(養畜), 영어(營漁) 및<br/>영림(營林) 포함]상속 재산<br/>가액 공제</div><div><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br/><u>30억원</u></div></div></div> | <div><div><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상향</div><div><div><input type="checkbox"/> (현형과 같음)</div><div><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div></div></div> <table><tr><th>피상속인의<br/>영농기간</th><th>윤준병의원안</th><th>박덕흠의원안</th></tr><tr><td><u>5년 미만</u></td><td><u>30억원</u></td><td><u>50억원</u></td></tr><tr><td><u>5년 이상</u><br/><u>10년 미만</u></td><td><u>50억원</u></td><td><u>70억원</u></td></tr><tr><td><u>10년 이상</u></td><td><u>100억원</u></td><td><u>100억원</u></td></tr></table> | 피상속인의<br>영농기간 | 윤준병의원안 | 박덕흠의원안 | <u>5년 미만</u> | <u>30억원</u> | <u>50억원</u> | <u>5년 이상</u><br><u>10년 미만</u> | <u>50억원</u> | <u>70억원</u> | <u>10년 이상</u> | <u>100억원</u> | <u>100억원</u> |
| 피상속인의<br>영농기간                                                                                                                                                                                                                          | 윤준병의원안                                                                                                                                                                                                                                                                                                                                                                                                                                                                      | 박덕흠의원안        |        |        |              |             |             |                               |             |             |               |              |              |
| <u>5년 미만</u>                                                                                                                                                                                                                           | <u>30억원</u>                                                                                                                                                                                                                                                                                                                                                                                                                                                                 | <u>50억원</u>   |        |        |              |             |             |                               |             |             |               |              |              |
| <u>5년 이상</u><br><u>10년 미만</u>                                                                                                                                                                                                          | <u>50억원</u>                                                                                                                                                                                                                                                                                                                                                                                                                                                                 | <u>70억원</u>   |        |        |              |             |             |                               |             |             |               |              |              |
| <u>10년 이상</u>                                                                                                                                                                                                                          | <u>100억원</u>                                                                                                                                                                                                                                                                                                                                                                                                                                                                | <u>100억원</u>  |        |        |              |             |             |                               |             |             |               |              |              |

\* 윤준병의원안 2025. 2. 13. 발의(의안번호 8123), 박덕흠의원안 2025. 6. 13. 발의(의안번호 10824)

☐ 두 개정안은 영농상속 공제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피상속인의 계속 영농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상향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안은 ① 5년 미만 계속하여 영농한 경우 30억원,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계속하여 영농한 경우 50억원, ③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한 경우 100억원으로,

박덕흠의원안은 ① 5년 미만 계속하여 영농한 경우 50억원,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계속하여 영농한 경우 70억원, ③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한 경우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함.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sup>1)</sup>에서는 영농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공제해 주는 영농상속공제(1979년 도입)를 규정하고 있음.

영농상속공제는 농업·임업·어업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고(제조업·도소매업 등 농업·임업·어업 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됨),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8년(2023. 2. 27까지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2년) 전부터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농지 등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 당해 농지 등의 가액 중 30억원의 범위에서 공제받을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영농상속공제에 대해서는 그 한도액이 30억원으로 가업상속공제의 공제한도가 최대 600억원인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므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영농기간별로 차등하되 공제한도를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가업상속공제 제도(1997년 도입)가 도입된 시기에 영농상속공제 제도와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공제한도와 공제요건이 비슷한 수준(영농상속공제 한도 2억원, 가업상속공제 한도 1억원)이었는데, 2008년부터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공제한도가 대폭 상향된데 반해 영농상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속공제의 경우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것임.

### [영농상속공제 및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공제한도 연혁]

(단위: 억원)

| 구분       | 1995년<br>~1996년 | 1997년<br>~2007년 | 2008년 | 2009년<br>~2011년 | 2012년<br>~2013년 | 2014년<br>~2015년 | 2016년<br>~2021년 | 2022년 | 2023년<br>~   |
|----------|-----------------|-----------------|-------|-----------------|-----------------|-----------------|-----------------|-------|--------------|
| 영농<br>상속 | 1               | 2               |       |                 | 5               |                 | 15              | 20    | 30           |
| 가업<br>상속 | -               | 1               | 30    | 60<br>~ 100     | 100<br>~ 300    | 200 ~ 500       |                 |       | 300<br>~ 600 |

###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 제도 비교]

| 구분         | 영농상속공제                                | 가업상속공제                                                                                    |
|------------|---------------------------------------|-------------------------------------------------------------------------------------------|
| 목 적        | 피상속인(농업인, 기업인)의 기술 및 경영노하우의 원활한 승계 지원 |                                                                                           |
| 대 상<br>업 종 | 농업(축산업 포함), 임업, 어업                    | 제조업, 도소매업 등 대부분<br>업종(농업·임업·어업 제외)                                                        |
| 공 제<br>대 상 | 농지(전·답·과수원), 초지, 산림지,<br>창고·축사 등      | 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br>자산                                                                   |
| 공제<br>한도   | 30억원                                  | (피상속인 계속경영 기간에 따라)<br>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br>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원<br>30년 이상 계속 경영: 600억원 |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음.

첫째, 농어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자유전 원칙 유지 측면에서 농어업 용지 등의 원활한 이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024년 농가 경영주는 연령별로 70세 이상이 49만 5천 가구(전체 농가의 50.8%)로 가장 많았고, 60대는 33만 2천 가구(33.1%), 50대는 12만 5천 가구(12.9%) 순으로, 전년대비 70세 이상 경영주는 증가(+3.6%)하였으나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감소하였음.

#### [2024년 경영주 연령별 농가]

(단위: 천 가구, %)

| 구 분  | 계              | 40세 미만     | 40~49세      | 50~59세        | 60~69세        | 70세 이상        |
|------|----------------|------------|-------------|---------------|---------------|---------------|
| 2024 | 974<br>(100.0) | 5<br>(0.5) | 27<br>(2.8) | 125<br>(12.9) | 322<br>(33.1) | 495<br>(50.8) |
| 증 감  | -25.3          | -0.8       | -5.7        | -16.1         | -20.1         | 17.4          |
| 증감률  | -2.5           | -15.4      | -17.3       | -11.4         | -5.9          | 3.6           |

주: 증감, 증감률은 전년 대비 수치임.

자료: 통계청,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2024년 어가 경영주 또한 70세 이상이 1만 7천 가구(전체 어가의 41.9%)로 가장 많았고, 60대는 1만 5천 가구(37.2%), 50대는 6천 가구(13.8%) 순으로, 전년대비 70세 이상(+7.4%) 경영주는 증가하였으나 나머지는 감소하였음.

## [2024년 경영주 연령별 어가]

(단위: 천 가구, %)

| 구 분  | 계               | 40세 미만       | 40~49세       | 50~59세        | 60~69세         | 70세 이상         |
|------|-----------------|--------------|--------------|---------------|----------------|----------------|
| 2024 | 40.9<br>(100.0) | 0.4<br>(1.0) | 2.5<br>(6.1) | 5.7<br>(13.8) | 15.2<br>(37.2) | 17.1<br>(41.9) |
| 증 감  | -0.9            | -0.1         | -0.2         | -0.7          | -1.1           | 1.2            |
| 증감률  | -2.1            | -25.0        | -6.7         | -10.7         | -6.7           | 7.4            |

주: 증감, 증감률은 전년 대비 수치임.

자료: 통계청,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둘째,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가업상속공제(가업상속공제에서는 2009년부터 피상속인의 가업 경영기간에 따라 한도를 차등하여 적용)와 유사하게 영농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기간이 길수록 상속 시 우대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측면이 있음.

셋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용 드론, 자율주행 농기계, 로봇 등 첨단 농기자재와 원격제어 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을 추진<sup>2)</sup>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영농의 규모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바 현행 영농상속공제 한도 수준으로는 안정적인 승계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수 있음

2)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7.26.] [법률 제19570호, 2023.7.25., 제정]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2년 정기회 세법 개정으로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는데, 다시 한도를 상향하여야 할 그간의 사정변경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참고로, 최근 5년 평균 영농상속공제 1인당 평균 공제금액은 5억 7,400만원 수준이고, 한도가 30억원으로 상향된 이후인 2023년 이후 한도 적용 건 수는 동 기간 공제 1,443건 중 4건에 불과함.

#### [최근 5년간 영농상속공제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 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건수             | 2,823     | 396     | 483     | 501     | 691     | 752     |
| 공제금액           | 1,620,780 | 191,515 | 282,830 | 277,726 | 401,703 | 467,006 |
| 1인당 평균         | 574.1     | 483.6   | 585.6   | 554.3   | 581.3   | 621.0   |
| 30억원한도<br>적용 건 | 7         | -       | -       | -       | 0       | 4       |

자료: 국세청

□ 만약, 영농기간에 따른 공제액 차등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개정안의 피상속인 영농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계속 영농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도 공제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피상속인의 영농기간은 2023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sup>3)</sup>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78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16조(영농상속) ②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으로 종전 2년에서 8년으로 상향되어 현재 피상속인의 계속  
영농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임.

문 의 처

02)6788-5161

-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다만,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8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하 이 조에서 “수용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해당 기업을 경영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8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경영하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업을 경영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